

편집위원회 규정

- 제1조** 본 협회 정관 제3조, 제4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정기간행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(사)한국커피협회 학술지 편집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제2조(역할)** 위원회는 본 학술위원회의 (사)한국커피협회 학술지(이하 '학술지'라 한다)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제3조(구성)** ① 편집위원장은 (사)한국커피협회 대표가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 하에 (사)한국커피협회 대표가 위촉한다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【2018.12.21 개정】【2022.4.9 개정】
- 제4조(위원의 균형성)** 편집위원은 커피·문화 관련 교육 분야, 경영·마케팅 분야, 산업·정책 분야, 기술·개발 분야, 의학 관련분야 등에 종사하며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.
- 제5조(학술지 내용)** 학술지에는 커피·문화 관련 교육, 경영·마케팅, 산업·정책, 기술·개발, 의학 관련분야의 연구 논문, 연구노트, 저명학자들의 총설, 그 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.
- 제6조(의결권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단,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제7조** 위원회는 학술지 논문투고 및 편집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학술지에 년 1회 이상 게재한다.
- 제8조**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- (1)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- (2)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(3) 2018년 3월 16일 개정규정은 제4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(4) 2018년 12월 21일 개정규정은 제5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(5) 2021년 1월 21일 개정규정은 제7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(6) 2022년 4월 9일 개정규정은 제8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